

#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 11. 2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11.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9.11.18.

다. 상정일자: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9.11.2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기관: 마포문화재단

2) 출연시기: 2020년도(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

3) 출연의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 마포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

### 3) 마포문화재단 주요 추진사업

- 공연전시사업: 문화예술 공연, 전시, 축제사업
- 지역문화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 생활체육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문화교육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 육성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출연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은 예술단체, 지역주민,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포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가 있는 명품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난 2007년 설립되었음.
- 그 동안 마포문화재단은 창조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구민이 예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집중 육성으로 문화예술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였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마포구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구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지역 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청년 예술가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주민 예술가 1만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문화예술 커뮤니티 정착, 객석나눔을 통한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일상의 장소를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용한 M-PAT 클래식 음악축제 등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지역 예술축제 개최는 물론, 구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명품 문화도시 마포 건설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이와 같은 활동으로 M-PAT 클래식 음악축제가 2019년도 제16회 국제비즈니스 대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따라서 동 재단에 대한 출연은 마포구 문화예술사업의 진흥과 건전한 생활체육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내년에 시행되는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이용구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공연 등 프로그램의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재단측에서는 강구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참고자료】

### 1.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계	자체수입	출연금
2015	6,922,163	4,711,386	2,210,777
2016	8,105,647	5,016,647	3,089,000
2017	8,858,720	4,744,520	4,114,200
2018	8,936,848	4,533,395	4,403,453
2019	9,770,852	4,388,515	5,382,337
2020(안)	10,187,317	3,766,232	6,421,085

### 2.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